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1
----------	---------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의자 : 홍재희, 정재봉, 김순옥,
강선영, 이충현, 한상욱,
고찬양, 신찬호, 박학용,
박성호, 최동철, 전철규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는 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우리 구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관내 보육 구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함.

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보건복지부의 배정물량 이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나. 협조부서 : 가족정책과

다. 입법예고 : 2024. 1. 19. ~ 2024. 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간제보육교사”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간제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배정물량 이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
2.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
3.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홍보 사업
2. 시간제보육 담당자 및 시간제보육교사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용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료
2. 시간제보육교사 봉급 및 수당
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시설비 및 운영비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관내 보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시간제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 3을 준용한다.
-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